

201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총 괄 (49건)

(신규8 / 변경41)

- 복 지 분 야 : 16건
- 경 제 분 야 : 10건
- 환 경 분 야 : 6건
- 도시교통분야 : 6건
- 세 정 분 야 : 4건
- 일반행정분야 : 7건

※ 광주시 특수시책 : 5건



목 차

《 복지분야 》

1.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건축주택과) 1
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 카드제 시행(사회복지과) 1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인상(사회복지과) 1
4.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확대(노인장애인복지과) 1
5.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사업 추진(노인장애인복지과) 2
6.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
7.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
8.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단가 인상(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
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3
10. 셋째아 보육료지원 대상 확대(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3
11.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3
12.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3
13. 만5세아 무상교육 누리과정 도입(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4
14.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4
15.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총무과) 5
16. 취약계층대상 사이버 검정고시 과정 운영(공무원교육원) 5

《 경제분야 》

1.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경제산업정책관실) 6
2. FTA 농업정책자금 지원(생명농업과) 6
3. 최저임금 인상(일자리창출과) 6
4. 공공근로사업 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일자리창출과) 6
5.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지원 확대(국제협력과) 7
6.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확대(국제협력과) 7
7.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확대(국제협력과) 7
8.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확대(국제협력과) 7
9.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확대(국제협력과) 8
10. 무역보험보증료 및 신용지원 확대(국제협력과) 8

《 환경분야 》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시행(환경정책과) 9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환경정책과) 9
3. 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강화(환경정책과) 9
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기후변화대응과) 10
5.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기후변화대응과) 10
6.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기후변화대응과) 10

《 도시교통분야 》

1. 공동주택 회계 통합프로그램 보급(건축주택과) 11
2.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토지정보과) 11
3.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토지정보과) 11
4.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대상 확대(교통정책과) 12
5.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교통정책과) 12
6.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교통안전과) 12

《 세정분야 》

1.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시행(세정담당관실) 13
2. 모범납세자 광주은행 금융 우대(세정담당관실) 13
3.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정담당관실) 13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인하(세정담당관실) 14

《 일반행정분야 》

1. 학교무상급식 확대(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15
2.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확대(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15
3. 작은 도서관 활성화(문화수도예술과) 15
4. “120빛고을콜센터” 연장 운영(시민소통과) 15
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주체 변경(상수도사업본부) 16
6.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대응구조과) 16
7. 24시간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아동복지관 등 소방시설 의무설치 확대(대응구조과) 16

◆ 복지 분야

제 목	현 행	변 경
<p>1.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p> <p>(건축주택과) ☎ 613-4824</p>	<p>※ 신규 (광주시 특수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자 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2년간 지원 - 수혜인원 : 매년 760세대 - 예산액 : 18억원(2년)
<p>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전용카드제 시행</p> <p>(사회복지과) ☎ 613-3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카드 사용시 수동으로 집행내역 입력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보조금 전용카드간 자동 연동화시스템 구축 - 보조금카드 사용내역 실시간 전송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내역 모니터링 - 수시 집행내역 확인으로 부정 사용 사전방지 등 투명성 제고
<p>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인상</p> <p>(사회복지과) ☎ 613-323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인 가구 최저생계비 - 1개월 1,439,413원 ※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수급자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인 가구 최저생계비 - 1개월 1,495,550원 ※ 2011년 대비 3.9% 인상
<p>4.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확대 (대상자 및 지원액)</p> <p>(노인장애인복지과) ☎ 613-32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중증 : 1~2급, 3급 중복장애인 인원 : 6,114명 지원액 : 월 10천원 예산액 : 7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인원 : 7,732명 지원액 : 월 20천원 예산액 : 1,856백만원

제 목	현 행	변 경
<p>5.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 사업 추진</p> <p>(노인장애인복지과) ☎ 613-3292</p>	<p>※신규</p> <p>(광주시 특수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기초수급가구 18세미만 뇌병변·지체중증장애인(1~2급) ◦ 인원 : 55명 ◦ 기준 : 1가구 1대 2,500천원 ◦ 예산액 : 138백만원
<p>6.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가정의 부담경감 및 입양아동의 건전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만 13세미만 국내 입양아동 ◦ 지원단가 : 100천원/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가정의 부담경감 및 입양아동의 건전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만 13세미만 국내 입양아동 ◦ 지원단가 : 150천원/월,인
<p>7.생활시설아동 심리 치료비 지원</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2</p>	<p>※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대상 : 생활시설아동 - 인원 : 100여명 - 지원액 : 160,000원 이내/월,인 - 내용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 지원
<p>8.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아동 ◦ 지원인원 : 21,969명 ◦ 지원기준 : 3,000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아동 ◦ 지원인원 : 21,969명 ◦ 지원기준 : 3,500원/식

제 목	연 행	변 경
<p>9.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4</p>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시 특수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 지원기관 : 지역아동센터 199개소 ◦ 대상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복지교사 등 500명 ◦ 지원단가 : 30천원/월,인
<p>10.셋째아 보육료지원 대상 확대</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의 보육료 지원 - 대상 : 보육시설 이용하는 셋째 이상아동 0 ~ 만3세 (60개월까지) - 지원액 : 인/월 2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의 보육료 지원 - 대상 : 보육시설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 0 ~ 만4세(72개월까지) - 지원액 : 인/월 20만원 이내
<p>11.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3</p>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 대상 : 0~4세 아동 담임교사 - 인원 : 6,193명 - 지원단가 : 인/월 5만원
<p>12.한부모가족 지원 확대</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2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 12세미만 아동 - 지원액 : 월 5만원 ◦ 아동교육비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 지원 : 입학금, 수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 대상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 지원액 : 연 5만원 ◦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 대상 :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 지원액 : 월 5만원 ◦ 조손 및 미혼모부자가족 5세이하 아동 추가 양육비 지원 - 대상 :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 지원액 : 월 5만원 <p>*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지원은 동일</p>

제 목	연 행	변 경																																																							
<p>13. 만5세아 무상교육 누리과정 도입</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303</p>	<p>※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세아 아동가구의 보육비용 부담완화 및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아동 양육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소득 무관) 인원 : 6,318명 지원내용 : 만5세아 영유아보육료 월 20만원 담임교사수당 월 20~30만원 																																																							
<p>14.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p> <p>(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 613-228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양성파견, 긴급 일시적 돌봄 수요가정에 양육돌봄, 학습돌봄, 맞벌이가구 0세아 종일돌봄 시간제 돌봄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형</th> <th>이용단가</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td> <td>5,000원</td> <td>4,000원</td> <td>1,000원</td> </tr> <tr> <td>나(100%이하)</td> <td>5,000원</td> <td>1,000원</td> <td>4,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형</th> <th>이용단가</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td> <td>100만원</td> <td>60만원</td> <td>40만원</td> </tr> <tr> <td>나(50~60%이하)</td> <td>100만원</td> <td>50만원</td> <td>50만원</td> </tr> <tr> <td>다(60~70%이하)</td> <td>100만원</td> <td>40만원</td> <td>60만원</td> </tr> </tbody> </table>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나(100%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나(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다(60~70%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3개월 ~ 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 양성파견, 긴급 일시적 돌봄 수요가정에 양육돌봄, 학습돌봄, 맞벌이가구 0세아 종일돌봄 시간제 돌봄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형</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td> <td>4,000원</td> <td>1,000원</td> </tr> <tr> <td>나(50~70%이하)</td> <td>2,000원</td> <td>3,000원</td> </tr> <tr> <td>다(70~100%)</td> <td>1,000원</td> <td>4,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형</th>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td> <td>70만원</td> <td>30만원</td> </tr> <tr> <td>나(40~50%이하)</td> <td>60만원</td> <td>40만원</td> </tr> <tr> <td>다(50~60%이하)</td> <td>50만원</td> <td>50만원</td> </tr> <tr> <td>라(60~70%이하)</td> <td>40만원</td> <td>60만원</td> </tr> </tbody> </table>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4,000원	1,000원	나(50~70%이하)	2,000원	3,000원	다(70~100%)	1,000원	4,000원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70만원	30만원	나(40~50%이하)	60만원	40만원	다(50~60%이하)	50만원	50만원	라(60~70%이하)	40만원	60만원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나(100%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100만원	60만원	40만원																																																						
나(50~60%이하)	100만원	50만원	50만원																																																						
다(60~70%이하)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전국가구 평균소득50%이하)	4,000원	1,000원																																																							
나(50~70%이하)	2,000원	3,000원																																																							
다(70~100%)	1,000원	4,000원																																																							
유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70만원	30만원																																																							
나(40~50%이하)	60만원	40만원																																																							
다(50~60%이하)	50만원	50만원																																																							
라(60~70%이하)	40만원	60만원																																																							

제 목	현 행	변 경
<p>15.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p> <p>(총무과) ☎ 613-28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수입증지) 납부 - 7급 : 7천원 - 9급 : 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p>16.취약계층 대상 사이버 검정고시 과정 운영</p> <p>(공무원교육원) ☎ 613-70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원청소년](9~18세) 및 [청소년한부모](25세미만)에 대해서만 검정고시 학원비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시 특수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이하 취약계층의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재비 지원 - 예산액 : 58백만원

경제분야

제 목	현 행	변 경
1.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경제산업정책관실) ☎ 613-37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 20%(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25%(체크카드) - 공제한도 :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제 율 :30%(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 공제한도 : 4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확대) ※ 2012. 1. 1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대상
2.FTA 농업정책자금 지원 (생명농업과) ☎ 613-3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을 위해 융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 이자 3% 농업인 전액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자금 융자 상환이자 3%중 2% 보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융자액 : 320억원 - 보전 사업비 : 6.4억원(2%) · 상환이자 2%보전, 1%농업인 부담
3.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창출과) ☎ 613-35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급 4,320원 - 일 급 34,560원(8시간기준)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10% 감액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현행유지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급 4,580원 - 일 급 36,640원(8시간기준)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10% 감액적용 ◦ 적용기간 : 2012. 1.1~12.31
4.공공근로사업 근로 시간 및 임금 변경 (일자리창출과) ☎ 613-36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 임금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보조 · 옥외근로 : 35,000원 - 청년(29세이하) : 36,000원 - 전문기술직종 : 38,000원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 주30시간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금요일(09:00-16:00) ◦ 임금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보조 · 옥외근로 : 37,000원이하 - 청년(29세이하) : 38,000원 - 전문기술직종 : 39,000원이하 ※ 참여대상 및 선발기준 변경 없음

제 목	현 행	변 경
<p>5.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지원 확대</p> <p>(국제협력과) ☎ 613-39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출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1사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항공료 50% - 행사비용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출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1사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항공료 30~70% (1회 70%, 2회 60%, 3회 50%, 4회 30%) - 행사비용 100%
<p>6.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확대</p> <p>(국제협력과) ☎ 613-39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출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부스로 80%(국내외전시회 동일) - 물품운송, 통역, 항공료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출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부스로 80% ※ 국외전시회는 부스로 90%로 상향 - 물품운송, 통역, 항공료 50% ※ 신규참가기업 70%
<p>7.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확대</p> <p>(국제협력과) ☎ 613-39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출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부스로 70%, 6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수출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부스로 70%, 600만원 한도 ※ 일본, 러시아, 중동지역은 부스로 100%, 1,000만원 한도 (지경부 지침에 준하며, 변동가능)
<p>8.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확대</p> <p>(국제협력과) ☎ 613-39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1개 무역관, 사업비 7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바이어발굴, 기존거래선관리, - KBC지원 수출마케팅 직접 수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2개 무역관, 사업비 70% ◦ 사업내용 : 현행과 동일

제 목	현 행	변 경
<p>9.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확대</p> <p>(국제협력과) ☎ 613-39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초청 : 연 2회(상·하반기) - 1사 1바이어지원 - 행사비용(100%), 왕복항공료(70%), 체재비(2박), 산업시찰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초청 : 현행과 동일 ◦ [추가]개별기업 바이어초청 지원 -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50%) 숙박비(1박) - 지원대상 : 최근2년내 · 해외무역사절단 상담바이어초청 · 시주관 행사에 수출MOU 체결후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초청 · 500천불이상 수출계약목적으로 초청
<p>10.무역보험보증료 및 신용지원 확대</p> <p>(국제협력과) ☎ 613-39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연 수출 1,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한도 - 제조업 250, 무역업 150만원이내 ※지원보험(7종)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 환변동, 수출보증, 수출신용보증, 부품소재신뢰성보험, 수입자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 연 수출 2,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한도 - 제조업 300, 무역업 200만원이내 ※지원보험(10종) : 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 환변동, 수출보증, 수출신용보증, 부품소재신뢰, 해외시장개척보험(추가), 수출원자재수입보험(추가), 해외채권추심대행수수료(추가)

제 목	현 행	변 경
<p>1.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 평가제도 통합 시행</p> <p>(환경정책과) ☎ 613-414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시행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 각종 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이원화되어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법으로 통합하여 시행 ※ 2012. 7.22
<p>2.“석면안전관리법” 시행</p> <p>(환경정책과) ☎ 613-416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 - 주요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석면해체 사업장 공개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
<p>3.야생동물 밀렵행위 처벌 강화</p> <p>(환경정책과) ☎ 613-41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포획·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포획·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덫 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 포획·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밀렵> 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7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포획·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밀렵>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5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덫 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동일 - <상습밀렵>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2012.7.29 시행

제 목	현 행	변 경
<p>4.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p> <p>(기후변화대응과) ☎ 613-43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제로 부과(공동주택 제외) → 수수료에 대한 시민 부담이 낮아 감량의식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전국 종량제 실시 방침에 따라 수수료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종량제 실시 - 대상 : 단독주택 197,360세대, 소형음식점 16,110개소 ※ 공동주택의 경우 기 시행중 (kg당 55원 부과) ◦ 시 행 일 : '12.12월말
<p>5.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p> <p>(기후변화대응과) ☎ 613-43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가전제품의 분리배출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소형가전제품이 플라스틱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되어 금속 유가자원이 버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11.1월) ※ 분리수거용기의 식별이 용이 하도록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빨강색으로 지정 ◦ 시 행 일 : '12.11월
<p>6.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p> <p>(기후변화대응과) ☎ 613-43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법적제한 없음 → 온실가스 다량 배출자인 기업 등 감축의지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업체 지정기준 - 온실가스 배출기준 년 125천톤이상 업체 및 25천톤 이상 사업장 ◦ 감축목표 : '20년까지 폐기물 12.3%, 전환 26.7%, 수송 34.3%, 건물 26.7%, 공공 등 25% ◦ 법적규제 : 감축목표 미달성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시 행 일 : '12. 1월 ※ 공공부문 기 시행중('11~)

도시교통분야

제 목	현 행	변 경
<p>1.공동주택 회계 통합프로그램 보급</p> <p>(건축주택과) ☎ 613-4824</p>	<p>※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의 회계통합프로그램을 시내 모든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세대별 관리비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상호 단지별 관리비 비교 프로그램 추가 개발 - 보급대상 : 925개 단지(11월 현재) - 예 산 액 : 9천만원
<p>2.지적재조사 사업 추진</p> <p>(토지정보과) ☎ 613-45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방법으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지구 지정하여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수 필지를 재조사 하는 사업(재측량, 일필지조사) 추진 - 2012년 : 2개소 - 예 산 액 : 100백만원
<p>3.“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p> <p>(토지정보과) ☎ 613-45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 전원동의를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 국토법 등 기존 면적 미달 토지는 분할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등기촉탁을 함으로서 비용 절감 등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업무량 : 123건 286필지

제 목	현 행	변 경
<p>4.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대상 확대</p> <p>(교통정책과) ☎ 613-40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추가)
<p>5.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p> <p>(교통안전과) ☎ 613-44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종별 발급 수수료(1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12,100원 - 중형 11,000원 - 소형 3,850원 ◦ 번호판 발급 대행자 : 2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종별 발급 수수료 인하(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9,600원 - 중형 8,800원 - 소형 3,000원 ※ 시행시기 : 2012. 7. 27. 예정 ◦ 번호판 발급 대행자 : 3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사별 사업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길자동차(주) : 서구, 남구 · (주)금영 : 광산구, 남구 · (주)청명실업 : 북구, 동구
<p>6.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p> <p>(교통안전과) ☎ 613-44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만 사용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최고속도 25km/h 이상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2012.6.30일까지 구청(교통과)에 신고 ◦ 신고기간 : 2012. 1. 1부터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 ※ 2012.7.1일 이후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제 목	현 행	변 경
<p>1.지방세 온라인납부 서비스 전면시행</p> <p>(세정담당관) ☎ 613-25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R 납세고지서와 온라인(인터넷 등) 납부방식 병행 실시 (2010. 3월부터 실시) ◦ 5개사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R 납세고지서는 폐지하고 대신 간편 안내문으로 대체 ◦ 은행 CD, ATM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전국의 지방세를 전국 어디에서든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 구분없이 납부가능 <p>※ 위택스(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p>
<p>2.모범납세자 광주 은행 금융 우대</p> <p>(세정담당관) ☎ 613-2523</p>	<p style="text-align: center;">※신규</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시 특수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체납자로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납세자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출 금리우대 - 1.0%p ~ 1.5%p 범위 내 ② 예금 금리우대 - 0.1%p ~ 0.2%p 범위 내 ③ 전자금융 거래수수료 면제 및 외화환전 수수료 우대
<p>3.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p> <p>(세정담당관) ☎ 613-25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억원 이하 1인 1주택 : 1% ◦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2% 세율 적용)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법정세율인 4%를 적용해 감면 없음

제 목	현 행	변 경
<p>4.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인하</p> <p>(세정담당관) ☎ 613-25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단계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cc 이하 : 80원 - 1,000cc 이하 : 100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200원 - 2,000cc 초과 : 2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 한미FTA 체결 및 자동차세 세율 인하 ◦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20원 인하 ◦ 3단계 세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일반행정분야

제 목	현 행	변 경
1.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 613-2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초등 1~6학년 110,516명 ◦ 지원내용 : 학기중 중식(180일) ◦ 사 업 비 : 487억원 - 시 107, 자치구 49, 교육청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초·중학생 전체 ◦ 시행시기 - 중1학년 : '12.3월~ - 중2·3학년 : '12.10월~ ◦ 지원내용 : 학기중 중식(195일) ◦ 사 업 비 : 691억원 - 시 272, 자치구 50, 교육청 369
2.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 613-2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광주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광주 1년이상 거주하는 일반학자금 대출자 ◦ 지 원 율 - 1학기 1%p(6월분), 2학기 2.5%p(1년분) ◦ 사 업 비 : 55백만원(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광주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광주 1년이상 거주하는 일반학자금 대출자 ◦ 지 원 율 - 학생부담이자 전체 4.9%p(1년분) ◦ 사 업 비 : 360백만원(시비)
3.작은도서관 활성화 (문화수도예술과) ☎ 613-34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운영 : 229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대 상 : 운영중인 작은 도서관 중 선정 (20~30개관) - 지원기준 ·리모델링 : 1개관당 50~70백만원 ·운 영 비 : 1개관당 10~20백만원
4.“120빛고을콜센터” 연장 운영 (시민소통과) ☎ 613-2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 평일 08:30~18:30 ◦ 상담인력 : 11명(매니저1,상담원10) ◦ 이용방법 : 전화, 문자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2시간 연장(아침30', 야간90') ◦ 상담인력 : 11명(매니저1,상담원10) - 야간 상담사 근무(2명) ◦ 이용방법 : 120, 062-120(문자) - 전화(음성전화 음성안내) - 문자상담(문자 문의에 문자회신)

제 목	현 행	변 경
<p>5.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주체 변경</p> <p>(급수과) ☎ 613-609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 - 현 황 : 26개소 (동구2, 서구2, 북구9, 광산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 변경 - 현 행 : 구청장 - 변 경 : 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시행일 : 2012. 1. 29
<p>6.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p> <p>(대응구조과) ☎ 613-81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령 규정에 없는 사항이 추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공무원의 단속권한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항 포함(제143조제1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등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60조제3항 및 제161조제1항) - 과태료 : 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이륜 4만원
<p>7.24시간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아동 복지관 등 소방시설 의무설치 확대</p> <p>(대응구조과) ☎ 613-8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2월 5일부터 24시간 생활하는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기존 시설은 2년간 유예기간 부여('14. 2. 4까지)